

무배당 간편한 암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간편한 암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2년 11 월 16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간편한 암보험

1. 보험상품의 명칭

명칭	상품유형	보험종목
무배당(①) 간편한(②) 암보험	1형(간편가입형)	순수보장형
		페이백형
	2형(일반가입형)	순수보장형
		페이백형

※ 동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및 ②안에는 판매채널, 특정단체,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상품유형	보험종목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형(간편가입형)	순수보장형	30년만기	15/20/30년납	30세 ~ 64세	월납
	페이백형	100세만기			
2형(일반가입형)	순수보장형	30년만기	15/20/30년납	0세 ~ 64세	
		100세만기			
	페이백형	30년만기	15/20년납	0세 ~ 60세	
		100세만기			

3. 최대 보험가입금액(최초 가입시)

2,500만원

4.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7.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료가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부되는 경우에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다만, 초회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한다.

8.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당월분 포함)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할인하며, 최대 6개월분(당월분 제외)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9.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1.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4. 자동송금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자동송금서비스란,페이백형 선택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건강관리자금(중도급부금)을 계약을 체결할 때 신청한 계좌로 자동송금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별첨 제3호의 자동송금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5. 보험가입금액의 자동증액 서비스에 관한 사항

- 가.페이백형을 선택한 경우, 회사는 건강관리자금(중도급부금) 최종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에 건강관리자금(중도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로 보험가입금액을 자동 증액한다. 다만, 발생한 이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증액하지 않는다.
- 나. 자동증액되는 보험가입금액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 다.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이 자동증액 되었을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한다.

16. 1형(간편가입형)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1형(간편가입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 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의적심사(이하 ‘일반심사’라 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 가.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이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별첨 제2호 ‘간편심사용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참조)을 활용하여 계약심사과정을 간소화한 것을 의미한다.
- 나. 계약자가 1형(간편가입형) 가입시, 회사는 2형(일반가입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 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하고, 1형(간편가입형)과 2형(일반가입형)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며,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제1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 참조)을 받는다.(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1형(간편가입형)의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별첨1)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에 대하여 음성녹음으로 대신한다.) 이 경우 비교대상인 2형(일반가입형)은 1형(간편가입형)보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비교 대상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다. 계약자가 1형(간편가입형)을 청약할 때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가 그 계약의 청약일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심사를 통하여 2형(일반가입형)에 청약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라. 1형(간편가입형)의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1형(간편가입형)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약자가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가 2형(일반가입형)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1형(간편가입형)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마. ‘라’에 의하여 2형(일반가입형)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1형(간편가입형)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2형(일반가입형)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바. 1형(간편가입형) 가입시 회사는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별첨 제2호 ‘간편심사용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참조) 이외의 항목을 사용하여 계약심사를 하지 않는다.
- 사. 1형(간편가입형)의 청약서는 2형(일반가입형)의 청약서와 구별하기 쉽도록 별도의 청약서(별첨 제2호 참조)를 사용한다.

17.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다.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및 온라인채널을 제외한 범용으로 한다.

라. 상품 설명 안내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판매자료(약관, 안내장 등)의 상품명 하단에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연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2) 회사는 상품설명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한다..

- 이 보험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연금 또는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지 않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건강관리자금(중도급부금)은 지급사유 발생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시에만 지급되며, 그 이전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지급되고 건강관리자금(중도급부금)은 지급되지 않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별첨 제1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

1. 이 상품의 1형(간편가입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이 상품의 1형(간편가입형)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피보험자가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회사가 일반심사를 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이 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또는 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기간 및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형(일반가입형)과의 보험료 비교(예시)

상품명		(무)간편한 암보험					
상품구분		1형(간편가입형)		2형(일반가입형)			
보 장 내 역	일반암 진단자금	0,000만원		0,000만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 진단자금	0,000만원		0,000만원			
	소액암 진단자금	0,000만원		0,000만원			
	건강관리자금	매월 0,000원		매월 0,000원			
계약 승낙여부		일반상품 대비 질문항목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 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비교		[기준: 남/여, 00세, 단위: 원]					
		보험종목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1형(간편가입형)	2형(일반가입형)
		xxx형	00년	00년	x,xxx만원	00,000	00,000

- 비교 대상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에도 회사는 비교대상 상품인 일반심사보험을 간편심사 상품보다 보험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함.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보험모집인 확인]

보험모집인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보험모집인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모집인 _____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보험계약자 (인/서명)

(별첨 제2호)

간편심사용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사항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예"인 경우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 제자리암 또는 간경화로 "진단" 받거나 "염원 또는 수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병명 ▶ 치료기간 ▶ 치료병원 ▶ 치료내용 ▶ 재발경험 ▶ 완치여부

- ▶ 본 청약서는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 사실대로 직접 작성하였으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상 동의를 얻어 청약하였고, 보험약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받았으며, 약관의 주요내용 및 품질보증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가 이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별도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본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를 초회하거나 열람토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인(보험계약자)이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 추가양정에 약항함을 선택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금융저우회사업 제48호 2에 근거하여 금융그룹내 저주사 및 자회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며, 고객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 취급방침을 교부받았습니다.
- ▶ 약관의 주요내용을 잘 설명 받고 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하며,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후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험은 귀하께서 자필서명 없이 청약내용과 보험료 납입내역 등에 대해 전화음성녹음으로 청약하였음을 동의합니다.
- ▶ 제 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시 카드매출 승인일이, 자동이체시에는 이체일이 계약일(보장개시일)이 되며,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 보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사고위장, 피해과장 등)는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 로만 알릴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 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구두란 음성녹음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보험계약자 ()는 보험설계사 ()로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계약해지,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설명 들었으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별첨 제3호)

자동송금서비스 신청서 서식

자동송금서비스 신청서		
계약자	성명	(날인 또는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동송금계좌번호	(은행)
	주소	우편번호(-) 시(도) 구(군) 동(읍,면) 번지
	연락처	
	E-Mail	

상기 계약자 본인은 중도급부금 발생시 상기의 자동송금계좌번호로 중도급부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별첨 제4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5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6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 청약서의 서식